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9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50플러스캠퍼스, 50플러스센터)의 수강료 및 기본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6조의4제1항제7호)
-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19.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줄임.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사용료를 줄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6조의4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p> <p>1.~4. (생략)</p> <p>5.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p> <p>6.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p> <p><u>&lt;신 설&gt;</u></p>	<p>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p> <p>1.~4. (현행과 같음)</p> <p>5.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p> <p>6.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p> <p>7.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줄임.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사용료를 줄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u></p>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자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시 한시적(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액에 대한 보전비용 발생
  - 대 상 : 시립 인생이모작 지원시설(4개소) 사용료(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기본시설 사용료)
    - ※ 4개소 :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3개소(서부, 중부, 남부), 도심권50플러스센터
  - 감면률 :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 류 미 경 (02-2133-7798)